

내용을 받아 들여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과 같은 취지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함으로써 종결된 사건이다.

신청인 측은 00대가 인사 및 재무 행정, 학사 운영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였으며 현재 재판중인 도서관 신축 관련 혐의에 대하여도 무죄임을 확인 받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0일보는 신청인 측에 대하여 악의적이고 왜곡된 논지의 논설을 게재함으로써 신청인 측의 대외적 이미지와 명예 손상 및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일반 중재 사건과 달리 뉴스 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논설(칼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원래 관계 법리에 따르면 언론에 의한 명예 훼손이란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가 포함된 경우로 제한되고 단순히 타인이나 사건에 관한 비평이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때는 명예 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sup>3)</sup>

특히 미국에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또는 일반 공중의 관심사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누구라도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그것이 공적 활동과는 무관한 사생활의 폭로나 인신 공격에 이르지 아니하고 공정한 한도 내에서는 그 표현이나 용어가 아무리 신랄, 격렬하더라도, 또 그 논평의 결과 피논평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에도 논평자에게 명예 훼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sup>4)</sup> 이에 반해 우리 법원은 “...의견이나 견해의 표명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우리 법원은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고, 그 경우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실시하였다.<sup>5)</sup>

어쨌든 본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 측 청구를 수용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결론이 나서 사건은 일단락 되었지만 논설이나 칼럼에서도 명예 훼손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라고 하겠다.

#### IV. 시사점과 논의점

위에서 다룬 주요 사례들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의 경우는 기자가 할 이야기는 따로 있는데 이야기를 뒷받침할 자료가 따로 없을 때 선의의 시민을 도구로 삼아 그림을 짜맞추기 한 경우로 명백히 피해자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두 번째의 경우는 제3자에 의하여 제보된 자료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료 자

3) 권기훈, 상계 논문

4) 幾代通, “アメリカ法における 名譽毀損と Fair Comment- 事實の 眞實證明に 關して”, 『未延還曆記念·英美私法論集』, p.26

5) 권기훈, 상계 논문

체가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료에서의 논지방향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해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세 번째 사례의 경우는 어떤 사안에 관한 주관적 논평 기사의 경우, 사실 적시 보도의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명예훼손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겠느냐를 고찰해 볼 수 있게 해준 사례라 하겠다.

위에서 다룬 사례들은 2002년도에만 전국에서 다루어진 총 511건의 사례 중에서 단 3건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3건만을 다룬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시대에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사건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 평범한 시민 생활 주변에서 이러한 언론에 의한 명예권이나 인격권의 침해 사례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언론 분쟁의 사태가 신속하고도 명쾌하게 해소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 자체가 시민들을 위해서도 언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는 시민들과 언론 측 양쪽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먼저 시민들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해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잘못된 보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중재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sup>6)</sup>

그런데 문제는 당해 언론사에 직접 시정 요구를 하면 이것이 즉각 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의나 이의 제기를 어떻게든 따돌리려 하거나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는 항의자를 협박하여 물리치려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언론사가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가장 강력한 타율적 방법으로 법원에 제소하여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손해배상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80년대까지는 손해 배상 인용액이 3,000만원 미만이던 것이 지난 10년 동안 평균 3,600만원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95년 이후에는 1억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언론의 책임을 점차 엄중하게 묻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7)</sup> 이를 통해 볼 때 시민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한 가지 유효한 피해회복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에 호소해서 배상을 받는 방법은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승소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측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경제적 비용 등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평범한 시민으로서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었을 경우에 가장 효율적으로 구제를 받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중재 제도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법원보다 이용이 편리한 분쟁 해결제도로서 언론에 관한 분쟁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화해와 절충의 장

6) 강정홍, “자유언론과 명예 훼손”,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주제논문집, 2002. 11. 29.

p.16

7) 차재영,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주제논문집, 2002. 10. 18.

p.11

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8)

한편 원치 않는 언론 분쟁 사태를 신속하고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언론 측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자율적인 방법과 타율적인 방법이 있다.9) 자율적인 방법은 다시 사전 예방과 사후 처리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언론 침해에 관한 가장 확실한 사전 예방 방법은 기자의 자기 검열이다. 기자는 언론인으로서 탁월한 직업의식과 책임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기자의 자기 검열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회사 차원의 제도적 장치로서 언론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직무 교육과 재교육이 필요하다.

사전 예방을 이와 같이 언론종사자의 자기 검열 및 자체교육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주요 언론기관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그릇된 보도를 바로 잡고 예측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체 통제 장치를 운영하기도 한다. 미국의 주요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옴부즈맨(자체평가인) 제도가 그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 의사, 과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에 의한 기사 사전 열람제와 전문기자제 같은 제도를 두어 오보와 허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사후 구제의 방법으로는 언론사 자체의 자율적 피해 구제 기구를 통한 것과 신문 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에 의한 사후구제 등이 있으나 후자 둘은 엄밀한 의미의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가장 간편하고도 효율적으로 언론에 의한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 종사자의 자기 검열, 옴부즈맨 장치, 기사 사전 열람 장치와 같은 자율 통제 장치를 통하여 언론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 어려운 지방지와 지역방송의 경우 이미 국가 제도로 마련되어 있는 중재위원회와 같은 장치를 나름대로 반면교사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한다. 즉 본의 아니게 있을 수 있는 실책에 대하여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거기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자료들을 보다 전향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체 교정과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한다.

## V. 맺음말

언론 중재 제도의 기능관은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언론중재 제도가 처음 생길 당시에는 5공 정권의 언론기본법 치하에서 「언론 통제」의 수단으로 출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적어도 언론 측을 위해서는 언론이 진실을 추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는 사회적 사명을 다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게 발생하는 대국민 언론 분쟁이 법원의 소송까지 가는 것을 차단해주는 「언론보호」장치로까지 인식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본고에서 필자는 「언론보호자」로서의 언론중재관도 다시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것은 언론중재 제도가 언론으로부터 본의 아닌 피해를 당한 시민이 일반 시민으로서 사실상 이용하기에 어려운 법정 투쟁을 거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편안하게 피

---

8) 차재영, 상계논문, p. 6

9) 이병섭, “언론보도의 면책 요건과 한계”,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주제논문집, 2002. 5.

10. p.5.